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7-18호

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전서 및 감사위원 성명 공고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2항(결산서 등의 제출)」 규정에 따라
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전서 및 감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
공고함.

1. 기 간 : 2017. 6. 9. ~ 7. 10.

2. 장 소 : 동작구의회 홈페이지

2017년 6월 9일

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회장 신 희 근

